

#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·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(안 제17조).

### 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